



보도시점 2025.12.1.(월) 11:00 배포 2025.12.1.(월) 08:30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PLT) 가입으로 특허 획득 가로막는 규제철폐
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로 혁신기반 '진짜성장' 초석 마련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 우리기업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 활용해 해외특허 확대 기대 >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 체약국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 고객친화적인 조약으로서, 2005년에 발효되어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43개국이 가입

**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기회확대, 공증 인증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

①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일 인정요건: ① 특허출원한다는 표시, ② 출원인 표시, ③ 기술내용 설명부분

②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의견 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회복 신청건 중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약 85% 차지(391건/462건, '22.~'24.)

③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④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 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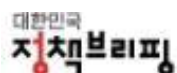
<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전담팀 출범·운영 >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 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PLT 가입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칠 특허제도 변화, PLT 조문별 주요내용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준호 (042-481-8321)
		담당자	서기관	명대근 (042-481-5736)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인 인정요건 완화

- 출원일 인정 3요소*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 → 추후 보완시
보완서류 제출일을 출원일로 늦춤
- * 특허출원인다는 표시, 출원인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

출원서류 미비 보완

- 선출원 누락부분 보완 시
보완일을 출원일로 인정
- 선출원 번호 인용 시
선출원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간주

기간구제 및 권리회복 확대

출원인 실수 구제

- 출원인 의견제출기간도와 후에도
2개월 기간 추가부여
- 국내·조약우선권
회복기간 2개월 부여

권리회복 확대

- 출원·특허 효력상실 후에도
출원·특허 회복규정 도입

PLT 가입으로 달라지는 특허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공증·인증 절차 축소

- 자필서명도 인정,
단 서류 진정성 의심 시
공증·인증 요구 가능



재외자의 국내절차 진행요건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 특허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재외자가
직접 절차수행하는 것을 허용

* 변리업계의 수임료저감 우려는 출원 후
국내 대리인 선임필수, 전자출원 시
국내 공인인증 필수 등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임

		현행	개선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일 인정요건 완화	- 특허출원 표시 미비 및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시 서류반려	- 출원일 인정 3요소*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 → 추후 보완시 보완서류 제출일을 출원일로 늦춤 * 특허출원한다는 표시,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
	출원서류 미비 보완	- 선출원 내용을 출원서에 누락 시 보완 불가 - 선출원 내용을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할 의무 존재	- 선출원 누락부분 보완 시 보완일을 출원일로 인정 - 선출원 번호 인용 시 선출원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간주
기간구제 및 권리회복 확대	출원인 실수 구제	- 출원인 의견제출기간 도과 시 심사관이 즉시 거절 가능 - 국내·조약우선권은 선출원 ~1년 내 미제출시 반려	- 출원인 의견제출기간 도과 후에도 2개월 기간 추가부여 - 국내·조약우선권 회복기간 2개월 부여
	권리회복 확대	- 청구범위유예출원의 청구범위 및 외국어출원의 국어번역문 기간내 미제출 시 출원취하 간주	- 출원·특허 효력상실 후에도 출원·특허 회복규정 도입
제출서류 간소화	공증·인증 절차 축소	- 특허권 이전서류 제출 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국적증명서) 제출 요구	- 자필서명도 인정, 단 서류 진정성 의심 시 공증·인증 요구 가능
재외자의 국내절차 진행요건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국내 대리인 선임을 통해 절차진행 필수	- 특허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재외자가 직접 절차수행하는 것을 허용 ※ 변리업계의 수입료저감 우려는 출원 후 국내 대리인 선임필수, 전자출원 시 국내 공인인증 필수 등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임

조문별 주요내용

제1조(용어정의), 제2조(일반원칙) 조약보다 유리한 조건만 가능

제3조(적용대상) PCT, 조약우선권, 분할, 등록특허, **제4조(안보예외)** 국가안보 조치는 예외

제5조 출원일

- (출원일 3요소) 출원표시, 출원인확인(+연락처), 기술내용 설명부분(모든 언어) 접수일이 출원일
→ 3요소 흠결시 보완명령, 보완시 보완일이 출원일로 인정
- (누락부분 보완) 외관상 기술설명서 누락시 누락부분 통지 → 누락 보완일이 출원일로 인정
- (인용에 의한 대체) 출원인의 이전출원에 대한 인용 → 그 인용이 명세서를 대체

제6조 출원

- PCT 규정 서식·내용 이상의 요구 불가
- 출원서 서면배제 불가
- 외국어출원 번역요구, 출원절차 수수료 부과, 우선권서류 번역문 요구 가능 등

제7조 대리

- 대리인에게 체약국 주소 및 자격 요구가능
- 재외자 대상으로 강제대리 예외 규정
- 출원서 제출,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만 재외자가 절차진행 가능

제8조(제출서류) 서류공증 의무부과 불가, **제9조(통지)** 서류 미통지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음

제10조 특허의 유효성; 취소

- 특허등록 후 출원단계의 형식적 요건에 의한 특허권의 무효·취소 불가
- 의견진술 기회와 보정·정정 기회 없이 특허권 무효·취소 불가

제11조 기간에 관한 구제

- 지정기간 만료 후라도 하더라도 2개월 동안 지정기간 연장허용 또는 절차회복이 필수

제12조 출원·등록 권리회복

- 출원인 등이 기간 미준수에 따라 출원/특허에 관한 권리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권리회복 필수
※ (사유)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경우
※ (기간) 사유소멸일~2개월/기간만료일~12개월 중 빠른날

제13조 우선권의 회복

- 우선권주장 기간경과 후 제출된 후출원의 우선권주장 회복기간(+2개월) 부여
※ (사유)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경우
- 우선권 선출원사본 미제출 시 추가제출 허용필수(우선일~1년4개월)

제14조 PLT 조약규칙 위임

- 출원인, 권리자 변경시 WIPO 국제표준서식(PCT 조약규칙 20(1))에 대한 인증요구 불가

제15조(파리협약과의 관계), 제16조(PCT 개정의 효과), 제17조(총회)

제18조(국제사무국), 제19조(개정)

제20조(조약에의 가입), 제21조(발효; 비준 및 가입의 발효일)

- 조약서명 비준서, 비서명 가입서로 가입 가능
- 비준서·가입서 제출 후 3개월에 효력발생

제22조 기존 출원·특허의 조약적용

- 계류중 출원·특허도 조약적용(제5조, 제6조(1),(2)제외)
- 조약절차 관련 국내절차가 既개시된 경우 적용의무 없음

제23조(유보) 단일성 요건 제외 유보불가, 제24조(조약탈퇴 선언),

제25조(조약의 언어), 제26조(조약의 서명), 제27조(수탁자; 등록)